

손실보상재결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20일
재결의 신청인	성명 또는 명칭		
	주소		
신청의 상대방	성명 또는 명칭		
	주소		
개수 명령 대상·종류			
손실발생의 사 실			
손실보상액과 그 내역			
협의를 내용			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
		없음

